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10-21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1 - 3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21누34741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
원고, 피항소인	주식회사 A
	소송대리인 [redacted]
	담당변호사 [redacted]
피고, 항소인	[redacted]구청장
	소송대리인 [redacted]
	담당변호사 [redacted]
제 1 심 판 결	[redacted]법원 2021. 1. 26. 선고 2019구합15283 판결
변 론 종 결	2021. 6. 18.
판 결 선 고	2021. 8. 20.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10-21

청구취지

피고가 2017. 11. 20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,003,890,900원(가산세 포함), 지방교육세 286,970,990원(가산세 포함), 농어촌특별세 56,903,570원(가산세 포함)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

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

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(1)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「행정소송법」 제8조 제2항, 「민사소송법」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, 아래 (2)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.

(2) 갑 제1, 2, 5, 12, 13,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주식회사 E가 주식회사 B의 발행주식 99.97%를 보유하고, 주식회사 B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였는데, 주식회사의 B의 분할로 원고가 설립되면서, 그 분할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원고의 발행주식 전부가 주식회사 E에게 배정되고, 원고가 주식회사 B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사실이 인정된다.

이러한 경우, 원고의 발행주식이 주식회사 E에게 배정된 것은, 주식회사 B이 분할되어 조직변경이 이루어지면서 그 주주인 주식회사 E의 주주 지위가 변동되는 것이고, 원고가 '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대가'를 주식회사 E 또는 주식회사 B에게 지급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.

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대가를 지급함이 없이 회사의 분할에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10-21

따라 권리를 승계한 무상취득이라고 할 것이므로, 이를 유상취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.

(3)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